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

1. 투자신탁의 명칭 : 브이아이 글로벌 멀티에셋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변경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3. 변경사유

- ① 책임투자운용인력 변경(손제성 → 양주경)
- ②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
- ③ 위험등급 변경 : 5 등급(낮은 위험) → 4 등급(보통 위험)
- ④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 : 4.44% → 8.94%
- ⑤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일부개정
- ⑥ 소득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연금과세)
- ⑦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신탁계약서 기재사항 등)

4. 변경사항

가.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내지 ③ (생략) <신 설>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관련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외의 사유(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1항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실보상액 또는 손해배상액은 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부칙	<신 설>	이 신탁계약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나.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 가>	2021-01-21 - 신탁계약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신탁계약서 기재사항 등) - 투자위험등급 변경 : 5 등급(낮은 위험) → 4 등급(보통 위험) - 책임투자운용인력 변경(손제성 → 양주경)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책임투자운용인력] 손제성	[책임투자운용인력] 양주경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4)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현황	-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등급(낮은 위험) ※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 4.44%	4등급(보통 위험) ※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 8.94%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산</th> <th>변경 전</th> <th>변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상장주식</td> <td>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td> <td>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td> </tr> <tr> <td>비상장주식</td> <td>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td> <td>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td> </tr> <tr> <td>시가형성 전의</td> <td>구주식의 평가액. 다만, 신</td> <td>구주식의 평가액. 다만, 청</td> </tr> </tbody> </table>	대상자산	변경 전	변경 후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	시가형성 전의	구주식의 평가액. 다만, 신	구주식의 평가액. 다만, 청	
대상자산	변경 전	변경 후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												
시가형성 전의	구주식의 평가액. 다만, 신	구주식의 평가액. 다만, 청												

미상장주식	주식과 구주식의 배당기산일이 같지 않은 경우 구주식의 평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청약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상신주로서 신주식의 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함	약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상신주로서 신주식의 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함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에 의함.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평가기준일 전날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에 의함. 다만,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평가기준일 전날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을 포함)은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비상장채권 (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한 가격	
	외화표시 상장 주식 및 채무증권	당해 투자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 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 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 전날에 해외증 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 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 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 격을 기초로 한 가격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 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 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 생상품의 경우 계산시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 가)에 의함.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에 의하 여 평가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 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 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 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표하는 가격)에 의함. 다만, 평가일의 공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 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 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 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가격. 파 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 또 한 이와 같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 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 또한 이와 같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	-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___ 금액의 16.5% (지방소득세 포함) <추 가>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___ 금액의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2020년 1월 1일 납입한 금액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 하의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 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 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연 900만	

	<p>- 해당 과세기간에 ___ 금액의 13.2% (지방소득세 포함)</p>	<p>원 중 적은 금액 적용 - 해당 과세기간에 ___ 금액의 13.2% (지방소득세 포함)</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p>	<p>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p>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이라 함) 한도</p>
	<p>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___ 금액의 16.5% (지방소득세 포함) <추 가></p> <p>- 단, 해당과세기간에 ___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추 가></p>	<p>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___ 금액의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2020년 1월 1일 납입액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로 함 - 해당과세기간에 ___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p>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 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업데이트)

끝.